



# 충청북도교육청

수신자 정치하는엄마들 귀하 (우 0693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02호정 치하는엄마들)

(경유)

제 목 정보 (  공개     부분 공개     비공개 ) 결정 통지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 10212355	접수일 2022. 12. 29.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청구 내용	<p>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.</p> <p>교육당국의 처리 결과가 어떠했는지 공개하여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, 교내 성추행·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 해야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(사건번호 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. 12. 11)과</p> <p>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 중 '사건발생 학교명'을 공개하여 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촉진될 수 있도록 공익적 필요를 분명히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(사건번호 2021구합66241 정보공개처부처분취소 2022. 4. 29)에 따라</p> <p>교육청이 기존 정보공개한 학교들을 포함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학교 내 교사 성폭력 처리 현황 정보를 청구합니다.</p> <p>첨부한 서식을 채워주시고, 사건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교육청이 파악하거나 감사한 내용, 장학사가 조사했거나 경찰 신고 내용 등에서 가해자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최대한 자세히 기술해 별첨해 주십시오.</p> <p>■청구 기간 : 2018년~ 2021년 (4년)</p> <p>■청구 내용 : 첨부 파일 참조</p> <p>첨부1. 판결문(서울고등법원 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. 12. 11)</p> <p>첨부2. 판결문(서울행정법원의 2021구합66241 정보공개처부처분취소 2022. 4. 29)</p> <p>첨부3. 서식_정치하는엄마들_2018_2021_학교_내_성희롱성폭력사안_처리현황_221229</p> <p>첨부4. 서식_정치하는엄마들_2018_2021_학교_내_성희롱성폭력사안_처리현황_사건개요별지_221229</p>
-------	---

<p>공개 내용</p>	<p>안녕하십니까? 먼저 충북 교육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.</p> <p>귀하께서 2022. 12. 29. 청구하신 『2018-2021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 정보 공개 청구』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</p> <p>[청구내용]</p> <p>2018-2021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 결과 공개</p> <p>[답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8-2021 학교 성폭력 처리 현황 결과</li> <li>- 정보공개요구자가 요청하는 서식 중 ‘관할지역/해당연도/학교형태, 학교급/최초 사건 인지일자, 인지기관, 인지경로/관할교육청 보고일자, 보고기관/사건개요/가해자 징계 연번, 직위, 성별, 현재 기준 재직여부, 직위해제 기간/피·가해자 분리기간, 분리방법/교육(지원)청 조사여부, 조사기관, 조사기간, 조사방법/교내전수조사 실시여부, 실시기관, 실시기간/교육청 징계내역 일자, 징계종류/실제 징계내역 일자, 징계종류/수사기관 등에 신고여부, 신고일자/피해자지원 여부, 지원기관, 지원내용’을 공개함.</li> <li>- 비공개 자료는 ?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? 제9조제1항제6호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 1호에 따라 ‘발생학교명/가해자 재직기간/첨부4(사건개요별지)’는 비공개함.</li> <li>- ‘최초사건 인지 익명·실명 신고 여부/ 감사실시 여부, 실시기관, 실시기간/ 수사기관 등에 신고주체, 신고기관, 혐의/수사현황 진행상황, 처분기관, 처분통보일, 처분내용/ 재판현황 심급별 진행상황, 선고일, 최종심법원, 선고내용/ 피해자 지원 기간’자료는 실제로 생산·접수하지 않은 경우로 정보 부존재임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2018-2021 학교 성폭력 처리 현황 결과를 첨부합니다.</li> </ul> <p>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담당자 지혜경 장학사 [(043)290-2892, jhk0361@korea.kr]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</p>
--------------	---



공개 일시	2023. 01. 26. 16	공개 장소	
*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			
공개 방법	[ ] 열람·시청 [ ] 사본·출력물 [x] 전자파일 [ ] 복제·인화물 [ ] 기타		
수령 방법	[ ] 직접 방문 [ ] 우편 [ ] 팩스 전송 [x] 정보통신망 [ ] 전자우편 등		
납부 금액	① 수수료	② 우송료	③ 수수료 감면액
	0원	0원	0원
	계(①+②-③)		0원
납부일	수수료 산정 명세		수수료 납입계좌(입금 시)
			[ ]
*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,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.			
비공개 (전부 또는 일부) 근거 조항			
비공개 (전부 또는 일부) 내용 및 사유			

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## 충청북도교육감

장학사 지혜경

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

협조자

시행 체육건강안전과-1393(2023. 01. 26.)

우 2863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

전화번호 043-290-2157

팩스번호

043-290-2739

/ lnet05@korea.kr

/ 공개 구분

## 유의 사항

1.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- 가.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 - 나.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 - 다.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2. 수수료는 **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** 내실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.
  - 가.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
  - 나. 수입인지(정부기관) 또는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
3.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**납부일**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.
4.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5.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**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 : [www.simpan.go.kr](http://www.simpan.go.kr)) 또는 행정소송**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6.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
7.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